**제 1 조 [목적]**

이 규정은 회사(자회사 포함)의 임원에 대하여 직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법령, 정관, 이사회결의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와 전제하에서 그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**제 2 조 [임원의 정의]**

임원이란 제5조에 정한 직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

**제 3 조 [임원의 위촉 및 임기]**

임원은 채용 및 승진 절차를 통해 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

단,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업무감독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, 임기는 3년으로 한다 (이사, 사외이사, 감사)

**제 4 조 [임원 직급 체계]**

1. 임원은 업무 책임의 범위, 권한 및 의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위 구분을 한다

○ 회장

○ 사장

○ 부사장

○ 전무

○ 상무

○ 이사

○ 감사

2.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, 자문위원 등 임원에 준하는 촉탁을 둘 수 있다

**제 6 조 [임원 승진 연수]**

원칙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승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

**제 7 조 [임원 지원 방안]**

임원 보수의 결정은 회사의 지불능력 및 임원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한다. 단 등기임원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

기타 처우 및 복리후생, 업무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다

1. 인센티브

○ PS(초과이익분배금)는 회사의 인센티브 시행지침에 따라 발생시 지급하며, 기타 특별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특별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

1. 스톡옵션(주식매수선택권)

○ 부여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

1. 차량 지원

차량지원 대상은 업무의 성격 및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되, 아래 직급별 한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. 다만 포상 성격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차량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품의에 의해 승인을 득한다

○ 전무 이하 : 차량가액 5,000만원 이하 (그랜저/K7 등)

○ 부사장 : 차량가액 9,000만원 이하 (G80 등)

○ 사장 이상 : 차량가액 13,000만원 이하 (G90 등)

1. 퇴직금 산정 및 배수 적용

퇴직금은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회사 직원 퇴직금과 동일하게 평균임금 방식을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직급에 따른 배수 적용은 아래와 같다

○ 이사 : 1배수

○ 상무 : 1배수

○ 전무 : 1배수

○ 부사장 : 1배수

○ 사장이상 : 2배수

1. 교육비 지원

○ 별도 규정

1. 기타 지원

○ 회사 업무 지원 및 복리후생 지원 제도에 의해 출장비, 경조금, 종합건강검진비, 통신비, 기타 복리후생 등을 지원한다

○ 특별위로금 지급

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전체 퇴직금의 최대 100%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등기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

**부 칙**

**제 1 조 [시행일]**

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

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2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